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

1. 제 안 자 : 김성우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 시행)으로 성주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성주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,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다.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라.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마.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바.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사. 조기퇴직수당 신청절차, 심사대상,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~제1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규칙안은「지방자치법」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퇴직수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본 규칙을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